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11,585,414	102,347,562
일반회계	2,967,557,377	89,026,721
특별회계	444,028,037	13,320,841
공기업특별회계	350,451,687	10,513,55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2,919,227	4,887,57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7,532,460	5,625,974
기타특별회계	93,576,350	2,807,291
교통사업 특별회계	33,990,469	1,019,71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85,323	71,56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355,964	100,679
대지보상 특별회계	1,298,503	38,955
기반시설 특별회계	105	3
수질개선 특별회계	19,967,248	599,017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0,421,804	312,654
균형발전특별회계	21,869,934	656,09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87,000	8,61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344,38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1,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